

# 2021년도 2학기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대상 인권교육자료 - 혐오표현 대응 -

익산고등학교

## I 혐오표현의 정의와 위험성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또는 ②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은 당연하거나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 💡 모욕감을 주는 표현(모욕형 혐오표현)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하거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표현”

- 성별-김치녀, 성괴 등
- 나이-급식충, 틈딱충 등
- 인종이나 출신국가-짱개, 똥남아, 흑형, 다문화 등
- 종교-무슬림은 모두 테러리스트다
- 장애-병신새끼 등
- 성적지향-게이나?, 호모새끼, 게이/레즈 같다 등

### 💡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선동형 혐오표현)

“편견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심이나 적대심을 가지도록 하는 표현”

- 난민들은 거짓말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
-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 성소수자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위험하다.
- 여성들에게 큰일을 맡기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 🔪 개인에게 미치는 위험

혐오표현은 그 특성상 편견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학교, SNS 등 일상에서 누군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을 한다면, 소외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차별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며 누가 혐오표현을 할지 몰라 사람들을 피하기도 합니다.

### 🔪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험

혐오표현이 넘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혐오표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이 퍼진다면 차별의식은 더 견고해지고 혐오표현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는 더욱 불평등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자유로우며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가치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기존의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굴레는 더 강화됩니다.

### 【용어해】 소수자

소수자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사상, 인종, 출신국가, 국적, 성적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흔히, 소수자는 그 국가 혹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상황에 따라 다수가 될 수 있는 '상대적 소수자', 그렇지 않은 '절대적 소수자'가 있으며 숫자와 무관한 경우도 있다. 또한 특정집단이 그가 속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 속에서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 II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 🔪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가지고 있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나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혐오표현은 폭력이지 차별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배제하고 존엄성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소외시키며, 존엄성을 해치는 혐오표현은 폭력이며 차별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라, 장애인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등의 표현은 이주민, 장애인 등을 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이라고 여기지 않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를 한 것입니다.

## III 학교 내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Q&A

### 1. 학생들이 장난과 재미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경우?

- 괴롭힘 등 모든 폭력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장난이나 농담이었다 해도 그 언행으로 당사자여서 또는 지인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혐오표현일 수 있습니다.
  - 표현 속에 무능력하고 우스운 사람 등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면, 악의가 없을지라도 혐오표현의 정도에 따라 대응하지 않으면 편견을 고착화하고 차별받는 이들의 처지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고, 죄책감 없이 차별행위를 하게 될 위험도 생겨납니다.
- 소수자나 그 집단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도 혐오표현으로 차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도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고, 혐오표현의 해악이 전염성과 집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이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조건'을 위협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존엄한 존재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살 수 있다는 확신과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 2. 혐오표현도 규제대상인가?

- 혐오표현이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2010년경부터(反다문화인터넷커뮤니티 중심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 혐오)이고, 2012년 일간베스트의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었으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혐오범죄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 서울에서는 2017년 교사가 수업 중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차이나’ 라고 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 보도 ▶ 뉴시스, 2017. 5. 31.)
- 이처럼 혐오표현의 피해자로 ‘개인’ 혹은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현행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수 있고, 학교 내 이와 같은 혐오표현이 발생할 경우 다음 법령에 준하여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학생**이 학생, 교사 등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 동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 진행: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학생 등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 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형법상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관한 **침해를 당한 경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절차 진행: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 동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보장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 이 경우는 학생(보호자) 당사자가 학생인권옹호관에 직접 권리구제 신청을 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함
  - 이외에도 학교구성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혐오표현으로 차별을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당사자가 직접 진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를 입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혐오표현은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는 교육감의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국가인권위원회 2020. 5. 28. 공동선언, 붙임5 선언문 참고)에 발맞추어 혐오표현의 해악에 주목하고 혐오표현 예방교육, 학교생활인권 규정에 혐오표현 금지 규정 마련 등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 학교 내 혐오표현 규제 및 제한의 필요성(2017헌마1356, 헌법재판소 결정, 2019. 11. 28.)

-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의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함**
- 특히,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큼
- 차별·혐오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음**

## IV 학교 내 혐오표현 발생 시 지도방법 예시

- **목적어는 즉각 문제 삼기**
  -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은 교실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즉각적으로 그 공간에 있는 모두에게 들리도록 지도
  - 침묵한다면 학생들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음
- **혐오·차별적 행동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 “지금 00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건 □□□(장애인 등 해당 소수자 집단 지칭)을 비하하는 말이고 욕이에요. 만약 주위에 □□□ 친구가 있다면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혐오와 차별에 피해를 입은 학생 지원하기**
  - 피해자 상담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물어보고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상담을 연계하고자 할 때는 피해자가 원하는 지 의사 확인 후 연결)
- **혐오표현에 따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지도와 인권교육의 필요성 검토하기**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 지도, 5쪽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등의 필요성 검토
  - 혐오표현이 발생한 공간에 있던 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한지 검토

## V 초등학생 대상 교육 사례

### ☞ 나는 어떤 색깔 들고기일까?

<수업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책 &lt;감기 걸린 물고기&gt; 함께 읽고 소감 나누기</li> <li>◆ 그림책의 주제 및 핵심 메시지 발견하기</li> <li>◆ 아귀의 소문처럼 교실이나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차별과 배제의 표현 찾기</li> <li>◆ 그러한 표현이 누구를 향하는지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 이러한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은 ‘장애인’, ‘어린이’ 라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li> </ul> </li> <li>◆ 정체성 개념 도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주는, 혹은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갖고 있는 특성을 떠올려보고 ‘나’ 를 나타내는 물고기 색깔하기</li> <li>- 이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았던 특성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기</li> <li>- 차별과 배제의 표현을 들었던 경험 나누기</li> </ul> </li> </ul>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과 배제의 표현을 찾을 때 단순한 관심 끌기나 유행 거리로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li> <li>◆ 한 명의 개인이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 알려주세요.</li> <li>◆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받은 차별을 민감하게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혹은 이미 차별 받은 경험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표현을 들었거나 차별 당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만약 학생들로부터 충분한 경험이 나오지 않는 경우 교사의 경험을 들려주세요.</li> </ul>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글·그림, 사계절(2016)

주인공은 배고픈 아귀와 알록달록한 물고기 때문입니다. 아귀는 물고기 떼를 잡아먹고 싶지만, 뽕뽕 뭉쳐 헤엄치는 녀석들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궁리하던 아귀는 물고기 사이에 숨어 조그만 목소리로 소문을 냅니다. "얘들아~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대~" 물고기가 감기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떼는 코웃음을 치지만 아귀는 그만두지 않습니다. 열이 나서 온몸이 빨개진 것이라고 그럴듯한 설명을 덧붙이지요. 소문은 조심스럽게 무리 속을 파고듭니다. 그 뒤로는 물고기들의 입을 통해 점점 부풀려지고, 심각해지고, 확산을 불러오지요. 결국 "우리한테 옮기 전에 당장 내쫓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귀는 입을 꼭 벌리고 기다리다가 쫓겨난 빨간 물고기들을 날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소문을 냅니다. "얘들아~ 노란 물고기도 감기에 걸렸대. 그새 옮았다는구나."라고요. 이제 물고기 떼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를 의심합니다. 다른 색깔 물고기들을 쫓아내면서요. (출처 : 예스24)

☞ **혐오표현에 맞서는 대항표현**

〈수업 설명〉

- ◆ 그림책 <노란 별> 함께 읽고 소감 나누기
- ◆ <감기 걸린 물고기>에서 물고기 떼가 아귀로부터 자신들을 지켰던 방법과 <노란 별>에서 덴마크의 왕과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켰던 방법 연결하기
  - 질문: 내가 차별받거나 공격당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혐오표현에 맞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 예화 <나와 상관없는 일> 읽고 연대의 중요성 이해하기
- ◆ 혐오표현에 맞서는 대항표현 만들기

(예시)

대상	혐오표현	대항표현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장애인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고 내리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대중교통은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 장애인도 우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의 구조가 개선되어야 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엄마	조용히 밥 좀 먹고 싶는데 애들은 왜 끌고 나와서는, 하여튼 맘충들 팔자 좋게 이 시간에 밥이나 사먹고 말아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지. 나는 이제 노키즈존만 갈 거야.	모든 아이는 돌봄이 필요하고, 그것을 엄마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불공평해.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야.
살던 나라의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난민을 반대한다!	우리는 난민을 환영합니다.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에 속지 맙시다.

- ◆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게 하는 대항표현 구호 만들어서 캠페인 활동하기
  - 장애인의 날, 세계여성의 날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념일에 대항표현 구호를 만들어서 교내에 홍보하기

〈유의점〉

- ◆ 혐오에 맞서는 일이 소수자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대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 학생들이 대항표현 만들기를 어려워한다면 자신이 예전에 사용했거나 들었던 혐오표현을 소수자를 지지하는 말로 바꿔보는 활동을 해도 좋아요.

VI **혐오표현·차별 관련 도서, 교육자료 등 참고자료**

☞ **단행본**

- 김지혜(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 인권교육센터 들(2018), 「인권교육 새로고침」, 교육공동체벗
- 홍성수(2018),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 김승섭(2017),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등

☞ **연구보고서 등 자료집 형태**

- 이혜정 외(2018),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 경기도교육연구원
  - ☞ 자료다운: [경기도교육연구원 홈페이지\(GIE통합검색\)](#)
- 홍성수 외(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등
  - ☞ 자료다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인권정책자료>실태조사·연구용역\)](#)

☞ **동영상 등 교육자료**

- 경기도교육청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고등학교 교과서 1부 1-2. 기본권과 권리 제한
  - ☞ 자료다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남부청사>민주시민교육과에 다운경로 탑재](#)
- 경기도교육청 제작 카드뉴스
  - ☞ [붙임2. 카드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교육자료
  -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혐오표현' 검색> '인권교육' 탭 선택\)](#)